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36

2016년 9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2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여성 공예인 창업 공간 및 창업지원 정보제공, 판로 개척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 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여성공예창업 전문 지원 시설로서, 해당 분야의 전 문성,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 고하고자 함.
- 시설의 주요 위탁 사무는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2년임.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 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의31)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민간위탁 주요내용>

구분		내 용		
시설 개요	시설명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공 릉동 622)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5,723.57㎡)		
	개소일자	2017. 1.(예정)		
	이용대상	여성공예인 및 일반시민(노원구민)		
	공간구성	점포형 창업실(53실), 공예미켓, 공예체험장, 공동작업장, 미을커뮤니티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주의 유 바용	위탁기간	2년(2017. 1. 1. ~ 2018. 12. 31.)		
	위탁사무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입주업체 지원, 디자인·마케팅·홍보 지원, 전시기획 운영 등 여성공예창업 지원 · 시민창작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 공예마켓, 공예체험장, 마을커뮤니티 센터 운영 ·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장 대관 등 공간 운영 · 기타 여성공예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소요예산	3,185,728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신규위탁)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2. (가칭)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 추진 경위 및 추진 현황

- (가칭)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여성들의 공예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공예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구)북부지청·지법 이전으로 인해악화된 주변 상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음.
- 동 플라자 조성의 구체적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 과거 법무부 소관 부지였던 북부지지청과 서울시의 문정지구 부지를 맞교 환하는 방식으로 재환 교환 협약이 체결('13년. 12월)됨으로써,
- '13년 9월부터 '14년 3월까지 제4차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 '대규모 재산 활용 경쟁 PT'를 통하여 북부지청 청사를 여성공예·창업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됨.

<표2. (가칭)북부여성창업플라자 추진 경과>

구분	내용		
'13. 12.	북부지청 재산교환 협약체결(市, 법무부, 대검찰청, SH공사)		
'13. 9 ~'14. 3.	대규모 재산 활용 경쟁 PT (1~4차)		
' 14. 5.	대규모 주요재산 기본활용 계획(시장방침 제138호)		
¹ 4. 6.	북부여성창업플라자 타당성 조사 용역		
' 14. 9.	북부여성창업플라자 활용계획		
'15. 1. ~ '16. 4.	공간구성 및 운영기획 T/F 운영(9차)		
' 15. 6.	설계용역 추진		
'15. 7. ~ 9.	총괄건축가 자문(2회)		
'15. 11.	예비입주기관 1차 선정(27개)		
' 16. 3.	리모델링 공사 시행		
'16. 1. ~ 7.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방안 연구용역		
'16. 10. (예정)	명칭 선정 [※ 서울크리에이터즈 싱크(도시브랜드담당관 협조) 및 엠보팅 활용]		
'16. 10. (예정)	입주기관 2차 선정(26개)		
'16. 12. (예정)	건설공사 준공 (2017년 1월 개소 예정)		

(자료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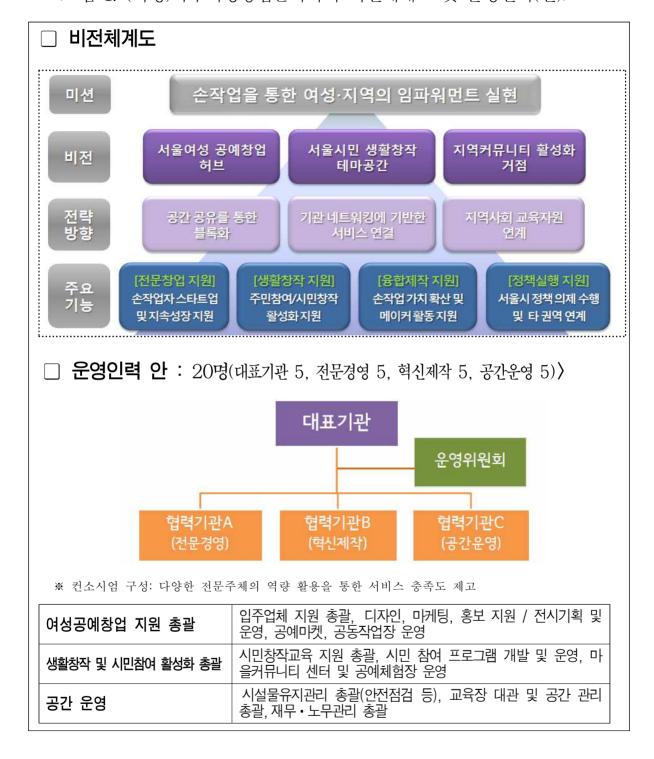
- 한편, 서울시는 '여성공예·창업 시설'로 그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여성창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창업의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의 지원을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여성 특유의 감성과 손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공예분야의 집중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부권역 여성창업의 구심점 역할이 가능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상기의 북부여성창업플라자를 조정하게 된 것으로 설명함.
- 동 플라자 조성을 위한 사업비(리모델링 공사)는 총 112억 9,700만원으로, '15년에 38억 9,700만원, '16년 74억원이 집행 됨.

<표3. (가칭)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 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총계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운영		3,897,000	7,400,345	11,279,345
	시설비	3,897,000	6,514,000	10,411,000
	감리비	_	864,740	864,740
	시설부대비	-	24,605	24,605

- '16년 8월 현재 동 플라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 중이며, 지난 ' 15년 11월에는 동 플라자에 입주하게 될 예비입주기관을 선정하였고('16 년 10월경 나머지 26개 기관 선정 예정), 이후 '17년 1월에 개소 예정임.
- 이에 본 동의안은 동 플라자의 개소를 앞두고 이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이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것이며, 향후 운영방향 및 운영인력(안)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그림 1. (가칭)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비젼체계도 및 운영인력(안)>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무는 여성공예창업 지원, 주민참여 및 생활창작 활성화 지원,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보임.
-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2)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적합여부와 동 조례 제6조3)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볼 때도, 상기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 ·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한편,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사무는 전문창업 지원, 생활창작지원 등다양한 전문적 기능을 요구받는 공간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할 것임.
- 이에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아이디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

4. 향후 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내실화 및 구체적 사업 전략 필요

- 서울시는 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개소를 2017년 1월로 예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계획으로 금번의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약 31억원을 편성할 예정임. 물론 개소 첫 해인만큼 시설내 집기구입비로 상당예산을 포함(10억원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예산 규모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단일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음.
- 이에 향후 예산심의 시 동 사업예산에 대한 상세 산출근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어 짐.
- 또한, 현재 동 플라자는 '공예'분야에 특화된 여성 자원을 육성하려는 것인 바, 향후 동작구에 설립(2018년 12월 개소 예정) 되게 될 여성복합시설인 '스페이스 살림'과의 컨텐츠 차별화 전략 등 서울여성 공예 창업 허브기관으로서의 그 구체적 실행전략 등 내실 있는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서울시의 대규모 재산활용 경쟁 pt를 뚫고 따낸 것으로, 동 플라자에 대한 설치비만도 11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임. 그런데, 동 플라자에서 선정한 '공예'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실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며, 동 플라자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의 문제에도 큰 고려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향후 동 플라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V. 토론요지: 「없음」

VI.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호 1336

제출년월일: 2016년 8월 12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여성 공예인 창업 공간 및 창업지원 정보제공, 판로개척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에 의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여성공 예창업 전무 지원시설로서

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여성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공릉동 622)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5.723.57 m²)

○ 개소일자 : 2017. 1.(예정)

○ 이용대상 : 여성공예인 및 일반시민(노원구민)

○ 공간구성 : 점포형 창업실(53실), 공예마켓, 공예체험장, 공

동작업장, 마을커뮤니티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 근거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2항.

성평등기본조례 제28조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2017. 1. 1. ~ 2018. 12. 31.)

○ 위탁사무 :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입주업체 지원, 디자인、마케팅、홍보 지원, 전시기획 운영 등 여성공예창업 지원
- 시민창작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생활 창작 및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 공예마켓, 공예체험장, 마을커뮤니티 센터 운영
-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장 대관 등 공간 운영
- 기타 여성공예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소요예산 : 3,185,728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성평등기본조례 제41조 제1항(사무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대규모 주요재산 기본활용 계획(시장방침 제138호, '14. 5.)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전문창업 지원, 생활창작지원 등 다양 한 전문적 기능을 요구받는 공간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처리의 유연성 및 효율성의 강화가 필요하며
- 시민, 타기관/조직, 지역사회의 인적、교육적、기술적 자원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매칭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 통과 협업 능력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 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성평등기본조례 제28조

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성평등기본조례 제41조 제1항

제4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방법 저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이현정(☎ 2133-5013)